

【問題提起】

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.

以上の論議から、次のような三点について考えていただきたい。

基于上述内容，希望大家能考虑以下三点问题。

1. 19세기 후반은 일본의 법적체계가 완성된 시기였다.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민법, 민사소송법 등이 차례로 만들어졌다. 이러한 일본의 법령은 1910년 즉, 20세기 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'제령'이라는 형식으로 '의용'되었다.

19世紀後半は日本の法的体制が完成された時期であった。憲法が作られ、また民法、民事訴訟法などが次々と作られた。このような日本の法令は、1910年、つまり20世紀初めに韓国が日本の植民地になってから「制令」という形で「依用」された。19世紀後半，日本の法律体制已经建成了。制定了宪法之后，又陆续制定了民法、民事诉讼法。这样的日本法令，在1910年，也就是20世纪初期韩国成了日本殖民地之后，作为日本实施殖民管理的“制令”，被“沿用”到了韩国。

2. 조선총독의 입법권한인 '제령권', <조선민사령>의 공포는 일본정부, 제국의회, 조선총독부 간의 견제와 타협을 통한 결과물이었다.

朝鮮總督府の立法権限である「制令権」、〈朝鮮民事令〉の公布は、日本政府、帝国議会、朝鮮總督府間の牽制と妥協の結果物であった。

“制令权”，也就是朝鲜总督的立法权限，还有《朝鲜民事令》的公布，都可以说是日本政府、帝国议会、朝鲜总督府之间相互牵制妥协的结果。

3.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법령을 식민지 조선사회에 적용하면서도 '특례조항'이라는 것을 통하여 식민통치를 강화해갔다. 이것은 조선총독의 권한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.

朝鮮總督府は日本の法令を植民地朝鮮社会に適用しながら、「特例条項」を通して植民統治を強化していった。これは、朝鮮總督の権限ともつながるものであった。朝鮮總督府將日本の法令沿用到作为殖民地的朝鮮社会，同时又通过“特别条例”加强殖民统治。这与朝鲜总督的权限相关。